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3. 8. 8 선고 2021가단14627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

담당변호사 최성대, 김형근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

담당변호사 김민우, 이조은

변 론 종 결 2023. 6. 20.

판 결 선 고 2023. 8. 8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2020. 1. 19. 체결된 200,000,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20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C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C에게 대출을 실시하였다.

순번	약정일자	대출과목	약정금액
1	2010. 2. 18.	일반자금대출	70,000,000원
2	2010. 2. 18.	일반자금대출	143,000,000원
3	2013. 9. 9.	기업일반운전자금	2,160,000,000원

나. C은 대출원리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2021. 7. 8.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출원리금을 연체하고 있다.

순번	약정일자	대출과목	잔여원금	연체이자 등	합계	비고
1	2010. 2. 18.	일반자금대출	15,166,698원	17,052,507원	32,219,205원	갑1-3
2	2010. 2. 18.	일반자금대출	143,000,000원	160,172,479원	303,172,479원	갑2-3
3	2013. 9. 9.	기업일반운전자금	2,160,000,000원	2,410,778,158원	4,570,778,158원	갑3-3
합계			2,318,166,698원	2,588,003,144원	<u>4,906,169,842원</u>	

다. C은 인천 남동구 D 외 6필지 지상 상가 E호 등을 주식회사 F에 매도한 후 2020. 1. 19.경 주식회사 F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200,000,000원 가운데 50,000,000원을, 2020. 1. 20.경 그 중 50,000,000원을, 2020. 1. 30.경 그 중 50,000,000원을, 2020. 1. 31.경 그 중

50,000,000원을 처인 피고에게 각각 지급하였다. 그 당시 C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내지 4,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C이 2020. 1. 19.경 그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200,000,000원을 증여하기로 합의한 후,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중 50,000,000원을, 2020. 1. 20.경 피고에게 그 중 50,000,000원을, 2020. 1. 30.경 피고에게 그 중 50,000,000원을, 2020. 1. 31.경 피고에게 그 중 50,000,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고 할 수 있다. C이 2020. 1. 19.경 대출원금 채무액만 2,318,166,698원 이상에 이르는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200,000,000원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C의 위와 같은 200,000,000원의 증여 경위에 비추어 C의 사해의사도 인정할 수 있으며,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수 있다.

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2020. 1. 19. 체결된 200,000,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,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또는 가액반환 의무의 이행으로 20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는 C이 인천 남동구 D 외 6필지 지상 상가 E호 등을 주식회사 F에 매도한 후 주식회사 F으로부터 지급받는 매매대금 가운데 200,000,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피고가 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동의를 하였으므로 C이 피고에게 200,000,000원을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원고가 그 행위의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.

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은 동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상주